

행정기관명

수신자
(경유)
제 목 **공매통지**

아래와 같이 공매할 것임을 통지합니다(근거: 「국세징수법」 제75조).

체납자	성명 (상호)			생년월일 (사업자등록번호)	
	주소 (사업장)				
공매재산의 표시					
공매공고일자		년 월 일			
공매장소		공매방법	경쟁입찰(기일입찰, 기간입찰)·경매		
배분요구의 종기일자					
회차	입찰일시(기간)		매각결정기일	공매예정가격	
	입찰기간(입찰일)	개찰일자			
수의계약		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않는 경우에는 「국세징수법」 제67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.			
채권신고 최고 및 배분요구 안내	1. 공매공고의 등기(등록) 전까지 등기되지 않은 채권자 및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전세권자는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해야만 합니다(「국세징수법」 제76조제1항 및 제2항). 2. 배분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해야 할 부담이 바뀌는 때에는 배분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는 이를 철회하지 못합니다(「국세징수법」 제76조제3항). 3. 공매공고의 등기(등록) 전까지 등기(등록)된 채권자가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공매집행 기록에 의하여 채권액을 계산하며, 채권액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(「국세징수법」 제76조제6항).				
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(단위: 원)					
세목코드	관리번호	연도·기분	내국세	농어촌특별세	
세목명	납부기한	계	교육세	가산금	

발신명의 직인

- 매각결정 전에 체납자 또는 제 3자가 체납액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압류 해제 및 공매를 취소합니다.
- 이 통지서는 「국세징수법」 제76조제5항의 채권신고 촉구 및 같은 조 제7항의 배분요구 안내,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 통지에 갈음합니다.
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

검토자 직위(직급)서명

결재권자 직위(직급)서명

협조자

시행 처리과-일련번호(시행일자)

접수

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일자)

우 주소

/ 홈페이지 주소

전화()

전송()

/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

/ 공개구분